

「실차 수밀 성능평가시스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한국자동차연구원 PBV연구센터(충북)

□ 공고 요청 장비

- 장 비 명 : 실차 수밀 성능평가시스템
- 구입금액 : 451,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 (전문성·기술성 필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실차 수밀 성능평가시스템’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특수 장비*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절차를 통한 최종 낙찰자 선정이 필요함

* 강우 모사 및 일정 압력 확인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는 설계, 제작 기술, 경험 수준에 따라 장비 실사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함. 특히 실시간 데이터의 정확도, 장비 오류, 장비 신뢰성 등은 단순 가격 충족 여부만으로 평가가 어려워,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구매 절차가 필요함

- (규격·가격 동시입찰 한계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등과 같이 가격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입찰참가기업의 기술적 우수성, 시스템 완성도, 운영 안정성 및 사업 수행 역량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사업에서 발주한 기존장비의 경우에도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특수장비에 해당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 선정하여 계약체결하였음

- 프레임 성능평가시스템, 조달청 공고번호 : R25BK00944699-000

□ 국가계약법 - 제 18조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에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2024. 12. 24.>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2024. 12. 2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2. 2.>

□ 국가계약법 - 제 43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19.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3. 9. 17.>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⑥ 삭제 <2019. 9. 17.>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2021. 3. 30.>

⑨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3조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집행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주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위원회는 평가 전달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평가위원의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⑧ 삭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별표1

[별표 1]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 관련)

1. 사업금액별

사업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8명	8명 이상	9명 이상

* 제10조제8항의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2. 평가유형별

가. 제2조제20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제21호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제2조제21의2호의 일반평가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층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통평가 위원수 9명 이상, 전문평가 위원 수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3 제1항의 정족수는 공통평가 위원별 및 전문평가 위원별로 각각 충족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수는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